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잡사는 행복한 농어촌

제공일 : 2011. 8. 2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 김 중 철

사무관 : 이 윤 숙

전 화 : 500-1860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4P)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8월 2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카자흐스탄 농업 분야 협력 활성화

- MOU 체결로 중앙아시아 농업협력의 진출 거점 확보 -

〈 주 요 내 용 〉

◇ 우리 정상 카자흐스탄 방문(8.24 ~ 8.25) 계기에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함

○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 식물 재배 및 가축사육, 전문가 교육 등 분야에서 관심분야 정보·자료 및 연구결과 교류, 농업분야 법규 및 제도 정보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특히,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가인 카자흐스탄과 협력 관계 강화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자원 외교 원활화 등에도 보탬이 될 전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2011년 8월 24일 우리 정상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양국간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카자흐스탄 농업부와 "한-카자흐스탄간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 식물 재배 및 가축 사육, 전문가 교육 등 분야에서 관심분야 정보·자료 및 연구결과 교류, 농업분야 법규 및 제도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다.

- 특히,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시설 영농 분야 발전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동 분야를 비롯 농업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가이자 CIS 국가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뒤를 이어 제3위의 곡물 생산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 강화로 향후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 외교 원활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 곡물 생산면적은 '08년 기준으로 총 1,990만ha에 이르며 주요 농작물은 밀, 감자, 보리, 옥수수, 쌀, 콩 해바라기 등으로 특히, 밀이 가장 중요한 농작물임

* 카자흐스탄의 연간 곡물생산량은 약 2,000만톤으로 이중 밀 생산량이 60%를 차지함

□ 농식품부는 이번에 체결한 카자흐스탄과의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프랑스, 뉴질랜드, 중국 등 총 12개 국가와 농업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협력 분야 수요가 많은 국가들과 MOU 체결을 통해 농업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참고1 | 카자흐스탄 국가 약황

국 명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수 도	아스타나(Astana, 인구 : 약68만명)
면 적	272만km ²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접경국 (국경선)	러시아(6,467km), 중국(1,460km), 우즈베크(2,300km), 키르기스(980km), 투르크메니스탄(380km), 카스피해(600km)
인 구	1,603만명(2010. 10월 기준)
인 중	카자흐인(980만), 러시아인(385만), 우크라이나인 (42만), 우즈베크인(48만), 위구르인(25만), 타타르인(23만), 독일인(22만) 등 ※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7%)으로 8번째
종 교	이슬람교(수니파), 러시아 정교
언 어	카자흐어, 러시아어(공용어)
행 정 구 역	2개 특별시(Astana, Almaty), 14개주
국 기	 ○ 하늘색 바탕은 카자흐스탄의 파란 하늘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 ○ 깃대 쪽의 수직 문양은 '국가장식'이라고 부르는 민족 전통의 무늬 ○ 중앙에는 32개의 햇살을 가진 금색 태양과 스텝지역에 사는 독수리가 나는 모양의 금색 그림

참고 2 | 카자흐스탄 농업 개황

□ 농업 환경

- '08년 기준 농업의 비중이 GDP의 5.3%에 불과하며, 농업의 GDP 비중은 점차로 하락하지만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에 해당
- '08년 GDP 대비 비중은 농업은 5.3%이고, 농촌 인구는 약 43%를 차지
- 전체 국토면적은 약 273백만ha, 이 중에서 농지는 223백만ha, 농지 중에서 경작지는 24백만ha이며, 목초지 5백만ha, 방목지 189백만ha임

□ 곡물 생산량 현황

-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생산 국가이며, 곡물 수출량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규모로 세계 5대 곡물 수출국임
- 카자흐스탄 곡물 생산지는 크게 코스타나이스크주, 북 카자흐스탄주, 아크몰린스크주이며, 지역별 곡물 생산 비중은 각각 30.7%, 29.2%, 19.3%에 이름
- 카자흐스탄 곡물 생산면적은 '08년 기준으로 총 1,990만ha에 이르며 주요 농작물은 밀, 감자, 보리, 옥수수, 쌀, 콩 해바라기 등으로 특히 밀이 가장 중요한 농작물임

참고 3 | 한-카자흐스탄 농축수산물 교역현황

□ 농축수산물 전체 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전체	12,651	22,915	27,563	24,332	26,439
	농산물	11,333	15,123	23,076	23,220	24,602
	축산물	829	1,997	3,354	470	472
	임산물	474	5,695	928	398	1,000
	수산물	15	100	205	244	365
수입	전체	261	114	147	152	825
	농산물	93	10	143	120	160
	축산물	63	104	4	24	665
	임산물	0	0	0	8	0
	수산물	105	0	0	0	0
무역수지	전체	12,390	22,801	27,416	24,180	25,614

□ 대 카자흐스탄 농수산물 주요 교역품목

(2010년 기준 ; 단위 : 천 달러)

순 위	품 목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9,041	우황 393
2	담배	7,970	녹용 272
3	음료	619	면 133
4	커피	561	기타한약재 25
5	라면	507	밀 1
6	합판	343	
7	간장	322	
8	건축용목제품	288	
9	베이커리반죽	276	
10	조제분유	244	

참고4 | 양자 농업협력 약정 체결 현황

(‘11. 8월 현재)

협약(계약)명	체결주체		체결 시기	주요내용
	우리측	상대측		
① 한·프랑스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수산부	‘07. 11.21	·국내외 농업정책 정보교환, 농업 기술 및 전문가 교환 및 협력 등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② 한·뉴질랜드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림부	‘07. 4.26	·농업인·기업간 이해·협력 증진, 농산물교역 관련 국제규범 준수 등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③ 한·알제리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업농촌 개발부	‘06. 5.1	·농업정책 및 기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전문인력·민간기업 교류 등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④ 한·몽골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식품농업부	‘03. 10.27	·작물생산, 가축사육, 동·식물육종 등 분야 정보·전문가 교환 등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⑤ 한·중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업부	‘96. 3.18	·농업정책 정보교환, 농업교역 정보 교환, 기술자료·정보·교류 협력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⑥ 한·이스라엘 농업협력 기술에 관한 약정	외교부	농업부	‘97. 8.	·농업관련 분야 정보교환, 민간 및 정부기관간 농업협력 촉진 등
⑦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외교부	농림수산성	‘68. 8.	·농림수산물기술에 관한 정책과제 및 연구 정보교환 등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운영
⑧ 한·브라질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업부	‘05. 6.25	·국내외 농업정책 정보교환, 농업 기술 및 전문가 교환 및 협력 등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⑨ 한·아제르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업부	‘09.10	·농업·농촌개발 등 정보교환, 민간 분야 협력·교역·투자 촉진 등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⑩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업 및 수자원부	‘10.2	·농촌발전, 투자 등 정보교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공동작업반 설치 운영
⑪ 한·DR공고 농업·농촌 개발 협력에 관한 약정	농식품부	농업부, 농촌개발부	‘10.9. 16	·국내외농업정책 정보교환, 전문가 상호 방문 등 ·실무위원회 구성·운영